

[붙임]

보험대차 피해 실태 설문조사

■ 조사목적

- 보험대차 대차료 지급기준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

※ 수집된 정보는 제도개선 활동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, 회원사의 참여가 제도개선의 핵심 근거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■ 제출방법

- Mail : pjw@scra.or.kr

- Fax : 0503-8379-2416

- 온라인 설문조사 :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가능(*모바일/PC)

※ 조합 홈페이지: scra.or.kr

① 참여자 정보

업 체 명	성 명	직 책	연 락 처

1-1. 주요 영업 지역

- ☐ 서울
- ☐ 경기, 인천
- ☐ 강원도
- ☐ 충청도
- ☐ 전라도
- ☐ 경상도
- ☐ 제주도

1-2. 보유 차량 대수(26년 5월 기준)

- ☐ 50대 미만
- ☐ 50대 이상 ~ 100대 미만
- ☐ 100대 이상 ~ 150대 미만
- ☐ 150대 이상 ~ 200대 미만
- ☐ 200대 이상 ~ 300대 미만
- ☐ 300대 이상 ~ 500대 미만
- ☐ 500대 이상 ~ 1,000대 미만
- ☐ 1,000대 이상

[참고사항] 문항을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사항에 “☑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
☐ 2 보험대차료 청구 대비 실제 수령 비율

※ 귀하가 보험사에 청구한 대차료 대비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의 비율을 응답해주시시오.

2-1. 최근 1년간 메이저 보험사(삼성·DB·KB)에 청구한 보험대차료의 실제 수령 비율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?

- ☐ 90% 이상(거의 전액수령)
- ☐ 80% ~ 90% 미만
- ☐ 70% ~ 80% 미만
- ☐ 60% ~ 70% 미만
- ☐ 50% ~ 60% 미만
- ☐ 50% 미만 수준

2-2. 최근 1년간 메이저 보험사 외 중소 보험사(MG손보·AA보험·딜리버리 히어로 등)에 청구한 보험대차료의 실제 수령 비율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?

- ☐ 90% 이상(거의 전액수령)
- ☐ 80% ~ 90% 미만
- ☐ 70% ~ 80% 미만
- ☐ 60% ~ 70% 미만
- ☐ 50% ~ 60% 미만
- ☐ 50% 미만 수준

2-3. 최근 1년간 청구한 렌트카 공제조합 실제 수령 비율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?

- ☐ 90% 이상(거의 전액수령)
- ☐ 80% ~ 90% 미만
- ☐ 70% ~ 80% 미만
- ☐ 60% ~ 70% 미만
- ☐ 50% ~ 60% 미만
- ☐ 50% 미만 수준

2-4. 최근 1년간 청구한 배상책임 보험의 실제 수령 비율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? (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고에 대차나간 렌트비)

- ☐ 90% 이상(거의 전액수령)
- ☐ 80% ~ 90% 미만
- ☐ 70% ~ 80% 미만
- ☐ 60% ~ 70% 미만
- ☐ 50% ~ 60% 미만
- ☐ 50% 미만 수준

2-5. 보험사로부터 대차료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습니까?

- ☐ 예, 있습니다.
- ☐ 아니오, 없습니다.

2-6. 삭감 경험이 있다면, 주된 삭감 이유로 보험사가 제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?

- ☐ 동종 차량이 아닌 '동급' 최저요금 기준 적용
- ☐ 대형 렌터카사의 할인 요금표 적용
- ☐ 대차 인정 기간 초과 주장
- ☐ 차량 연식·등급 불인정
- ☐ 기타 사유(이유 불명확 포함)
- ☐ 해당 없음(삭감 경험 없음)

2-7. 삭감된 금액을 소송 없이 보험사 주장대로 수용한 적이 있습니까?

- ☐ 예,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.(비용·시간적 부담)
- ☐ 아니오, 항상 이의를 제기합니다.
- ☐ 해당 없음

[참고사항] 문항을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사항에 “☑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
2-8. 삭감 피해 금액 규모(연간 추정)

- ☐ 100만원 ~ 500만원 미만
- ☐ 500만원 ~ 1,000만원 미만
- ☐ 1,000만원 ~ 3,000만원 미만
- ☐ 3,000만원 ~ 5,000만원 미만
- ☐ 5,000만원 ~ 1억원 미만
- ☐ 1억원 이상

③ 보험사별 부당 삭감·지연 사례

※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작성해주시오. 이 내용은 정책활용 자료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.

3-1. 부당 삭감·지연 피해를 경험한 보험사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.(복수선택 가능)

- ☐ 삼성화재
- ☐ DB손해보험
- ☐ 현대해상
- ☐ KB손해보험
- ☐ 메리츠화재
- ☐ 한화손해보험
- ☐ 롯데손해보험
- ☐ MG손해보험
- ☐ 흥국화재
- ☐ 캐롯손해보험
- ☐ 기타 손보사
- ☐ 피해 경험 없음

3-2. 가장 피해가 컸던 보험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해 주십시오.

※ 작성예시

- 보험사명
- 사고시기
- 차종
- 청구금액
- 실제수령금액
- 대차 인정기간
- 실제 수리기간
- 삭감사유(보험사 주장)

(예시 참조, 자유롭게 기술)

3-3.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?

- ☐ 예(지연 경험 있음)
☐ 아니오

3-4. 대차료 지급 지연 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었습니까?

- ☐ 1개월 이내
☐ 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
☐ 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
☐ 6개월 이상
☐ 소송 후에야 지급

④ 조건표 강요·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

※ 보험사가 낮은 요금표를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험을 응답해 주십시오.

4-1. 보험사로부터 할인 요금표를 강요받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받은 적이 있습니까?

- ☐ 예, 있습니다.
☐ 아니오, 없습니다.

4-2. 할인된 요금표의 대차료 지급 거부 시, 보험사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았습니까?
(복수 선택 가능)

- ☐ 대차 배정 불량 감소 또는 중단
☐ 계약 해지 통보
☐ 대차료 지급 지연
☐ 담당자 변경 후 처리 지연
☐ 불이익 없음

4-3. 보험사가 제시한 조건표 요금은 귀사의 실제 국산차 운영원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?

- ☐ 원가 이상(수용 가능한 수준)
☐ 원가와 비슷(간신히 수지가 맞는 수준)
☐ 원가 이하(손해 발생)
☐ 원가의 50% 미만(사실상 수용 불가)
☐ 해당 없음.(국산차 운영 X)

4-4. 보험사가 제시한 조건표 요금은 귀사의 실제 수입차 운영원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?

- ☐ 원가 이상(수용 가능한 수준)
☐ 원가와 비슷(간신히 수지가 맞는 수준)
☐ 원가 이하(손해 발생)
☐ 원가의 50% 미만(사실상 수용 불가)
☐ 해당 없음.(수입차 운영 X)

4-5.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

예 : 조건표 서명을 거부하자 해당 보험사 대차 배정이 중단되어 월 00건, 약 000원 매출 손실이 발생

(예시 참조, 자유롭게 기술)

⑤ 정비공업사 탈·불법 유상운송 피해

※ 정비공업사가 자가용 또는 렌터카 재임대(전대)로 사고차량 소유자에게 유상 대차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응답해 주십시오.

5-1. 귀사 영업 지역에서 정비공업사의 탈·불법 유상운송(대차 제공)을 인지하고 있습니까?

- ☐ 예, 인지하고 있습니다.
- ☐ 아니오, 모르고 있었습니다.

5-2. 정비공업사의 불법 유상운송으로 인해 귀사의 영업에 피해를 받은 경험 있습니까?

- ☐ 예,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.
- 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
- ☐ 피해 경험 없습니다.

5-3. 정비공업사의 탈·불법 유상운송 피해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.[복수선택가능]

- ☐ 사고 차량 고객을 정비공업사가 선점하여 대차 계약을 빼앗김
- ☐ 보험사가 정비공업사 대차를 묵인하거나 유도함
- ☐ 불법 저가 대차로 인해 시장 요금이 하락함
- ☐ 피해 경험 없음

5-4. 정비공업사 탈·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☐ 매우 필요하다
- ☐ 필요하다
- ☐ 보통이다
- ☐ 필요하지 않다
- ☐ 잘 모르겠다

⑥ 제도개선 희망사항

※ 보험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

6-1.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(복수 선택 3개 가능)

- 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 "동급" → "동종" 환원
- ☐ 보험대차협의회 법제화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)
- ☐ 보험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강화
- ☐ 대형 렌터카사의 편법 대리점 영업 규제
- ☐ 정비공업사 탈·불법 유상운송 단속 강화
- ☐ 대차료 현실화 및 휴차료 인상
- ☐ 보험사 대차료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법제화
- ☐ 기타: _____

6-2. 현행 보험대차료 지급기준(“동급”최저
요금)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☐ 매우 불합리하다 (즉각 환원 필요)
- ☐ 불합리하다
- ☐ 보통이다
- ☐ 합리적이다
- ☐ 잘 모르겠다

6-3. 손보사 항의방문·집회 참여 의향이
있으십니까?

- ☐ 무조건 참여 (적극 참여)
- ☐ 가능한 참여
- ☐ 상황에 따라 참여
- ☐ 아니다 (불참)

6-4. 보험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조합에서
구체적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할
의향이 있나요?

- ☐ 확보하고 있고 무조건 제출한다.
- ☐ 일부 제출 가능하다.
- ☐ 제출하고 싶으나 불이익이 걱정된다.
- ☐ 제출불가

6-5. 보험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및
조합 TF팀에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
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
십시오.

(자유롭게 기술)

[7항목은 5천대 미만 업체만 응답 요망]

7 일부 대형 렌트사의 보험대차 예약소를 통한 보험대차 영업 관련 설문

※ 일부 대형 렌터카사의 사고대차(보험대차) 예약소 관련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.

7-1. 귀사 영업 지역에서 대형 렌터카사가 보험대차 전문 예약소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나요?

- ☐ 예, 주변에 있습니다.
☐ 아니오, 없습니다. (또는 모릅니다.)

7-2. 일부 대형 렌터카사 보험대차 전문 예약소 영업으로 인해, 귀사의 사고대차 물량이 감소하였습니까?

- ☐ 예,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.
☐ 약간 감소한 것 같습니다.
☐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.
☐ 해당 없음 (우리 지역에는 아직 없음)

7-3. 일부 대형 렌터카사 보험대차 전문 예약소 영업으로 인한 피해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.(복수 선택 가능)

- ☐ 보험사가 대형사 대리점으로 대차 배정을 유도함
☐ 대형사 할인 요금이 기준이 되어 대차료가 낮아짐
☐ 사고 현장에서 대형사 대리점이 먼저 고객을 유치함
☐ 기 타: _____

- ☐ 피해 경험 없음

7-4. 일부 대형 렌터카사 보험대차 전문 예약소 영업으로 인한 월평균 매출 손실 추정액은?

- ☐ 손실 없음 / 해당 없음
☐ 100만원 미만
☐ 200만원 미만
☐ 300만원 미만
☐ 400만원 미만
☐ 500만원 미만
☐ 500만원 이상

7-5. 일부 대형 렌터카사 보험대차 전문 예약소 영업을 통한 시장 진입과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☐ 매우 부당하다 (즉각 시정 필요)
☐ 일부 부당하다
☐ 보통이다
☐ 자유 경쟁이므로 문제 없다.

[부당할 경우 이유 기재 바랍니다.]

(자유롭게 기술)

[참고사항] 문항을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사항에 “☑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